

# 「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」 개정 대비표

## 1. 개정이유

-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 개정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·준수 실태 점검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 추가 및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의 개선 요구권 반영

## 2. 신규조문 변경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<b>제 11 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)</b></p> <p>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(신설)</p> <p>(신설)</p> <p>7. (생략)</p> <p>8. (생략)</p> <p>9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<b>제 11 조(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)</b></p> <p>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7. 이 기준 및 법 제 32 조 제 3 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·준수실태에 대한 점검·조치</b></p> <p><b>8. 법 제 32 조제 2 항에 따른 평가(이하 “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”), 감독(법 제 48 조제 1 항에 따른 “감독”) 및 검사(법 제 50 조에 따른 “검사”)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</b></p> <p>9. (현행 7.와 같음)</p> <p>10. (현행 8.와 같음)</p> <p>11. (현행 9.와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 [별표 2] 개정사항 반영</p> <p>호번호 변경</p>
<p><b>제 36 조(성과보상체계의 평가 및 논의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매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대한 성과보상체계를 수립하기 전에</p>	<p><b>제 36 조(성과보상체계의 평가 및 논의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매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대한 <u>성과보상체계를 수립하는 경우</u></p>	<p>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 [별표 2] 개정사항 반영</p>

<p><b>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한다.</b></p> <p>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 2 항에 따른 <b>의견 확인 시</b>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 관련 임직원등에게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 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, <b>검토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(내부통제위원회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b>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	<p><b>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.</b></p> <p>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 2 항에 따른 <b>사전 합의 시</b>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 관련 임직원등에게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 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, <b>필요시 성과평가지표(KPI) 조정 등을 포함한 성과보상체계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, 성과보상체계를 설정하는 부서는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 금융소비자 보호총괄기관은</b> 검토결과를 내부통제위원회(내부통제위원회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신설&gt;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(2)</b></p> <p><b>제 1 조(시행일)</b> 이 지침은 2026 년 02 월 03 일부터 시행한다.</p>	